##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6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이원택・박희승・황명선

문대림 · 김한규 · 이병진

임호선 · 송옥주 · 윤준병

주철현 · 서삼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·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.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, 2022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전체농가의 50.2%에 그치고 있으며,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28.8%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 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 립하도록 하며,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 고,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·어가에 대한 보상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,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, 수량,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·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,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요구를 보장하고,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1호및 제2조제1호의2, 제7조의2,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###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'농어업재해"란 농작물·임산물·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·병충해·조수해(鳥獸害)·질병 또는 화재(이하 "농업재해"라 한다)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·질병 또는 화재(이하 "어업재해"라 한다)를"을 ""농업재해"란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"로 하고, 같은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"어업재해"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 재해를 말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"5년마다"를 "3년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

제2조의3제3호 중 "손해평가의 방법"을 "손해평가 방법(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보험목적물의"를 "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 검토를 실시하고, 보험목적물의"로 한다.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.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교육 등) ①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.
  -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험 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2(보험사업자의 의무)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라 한다)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라 한다)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"을 "재해보험사업자"라 한다)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"을 "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라"로한다.

제11조제5항 중 "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수 있도록 연 1회 이상"을 "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대상 품목의 품종, 수량,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"로 한다.

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.

제19조제1항 전단 중 "전부 또는 일부"를 "전부 또는 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"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"육성"을 "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<u>"농어업재해"란 농작물·임</u>	1. <u>"농업재해"</u> 란 「농어업재해
산물·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	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
에 발생하는 자연재해·병충	<u>농업재해를</u>
해・조수해(鳥獸害)・질병 또	
는 화재(이하 "농업재해"라	
한다)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	
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	
해・질병 또는 화재(이하"어	
업재해"라 한다)를 말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"어업재해"란 「농어업재
	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
	른 어업재해를 말한다.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	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의 수립ㆍ시행) ① 농림축산식	의 수립·시행) ①
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	
농어업재해보험(이하 "재해보	
험"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	
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	
험심의회 또는 「수산업・어촌	
발정 기본법 <sub> 제8</sub> 존제1항에	

따른 중앙 수산업·어촌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 이라 한다)을 <u>5년마다</u>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• 5. (생략)

③ ~ ⑥ (생 략)

제2조의3(재해보험 등의 심의)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(이하 "재보험"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・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<u>손해평가의 방법</u>과 절차에 관한 사항

0, J _] ~]
3년마다
, -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
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
관한 사항
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3(재해보험 등의 심의)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손해평가 방법(농업재해 및

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

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한다)--

4. ~ 6. (생 략) 제5조(보험목적물) ① (생 략)

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다.

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보험목적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 고. 보험목적물의-----

제6조(보상의 범위 등) ① · ② | 제6조(보상의 범위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> ③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 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 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 가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4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 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보험가입자에 대한 재 해대책교육 등) ① 정부는 재 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 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

<신 설>

따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하여야한다.
-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을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2(보험사업자의 의무) ①
 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
 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
  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
  결한 자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
  라 한다)는 농어업재해보험가 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  -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 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

제9조(보험료율의 산정)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(이하 "재해보험사업자"라 한 다)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.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 위로 산정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 략)
- ② (생략)
- (생 략)
  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 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· ⑦ (생 략)

한다	∤.
----	----

제	9조(	보현	료	율의	산?	정)	1	<u>재</u>	해
	<u>보험</u>	사임	감사	는 >	재해.	보호	네의	보	. 험
	료율	을	심	의회(	에서	심	의형	한	<u>산</u>
	정빙	식이	) t	<u> </u>				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손해평가 등) ① ~ ④ 제11조(손해평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-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 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 목의 품종, 수량, 재배방식 등 의 내용으로----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8(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전신청)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후단 신설>

#### ② · ③ (생 략)

제19조(재정지원) ① 정부는 예산 지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운영비"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신청) ①
<u>이 경우 보험가입</u>
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
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
으며,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
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
다.
제19조(재정지원) ①
<u>전부</u> 또는 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
또는 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
또는 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 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
또는 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 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
또는 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 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
또는 일부,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

- ② ~ ④ (생 략)
- 제25조의2(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제25조의2(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 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~ 3. (생 략)
  - 4. 손해평가인력의 육성
  - 5. (생략)
  - ② · ③ (생 략)

 	 	 _	_	_	_	_	_	_	_	_	_	_	_	_	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리) ① -----
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-육성 및 재 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 문성 제고
- 5. (현행과 같음)
- ② ③ (현행과 같음)